

대전지방법원 2021. 9. 15 선고 2019가단1215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1. 8. 25.

판 결 선 고 2021. 9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, E과 피고 사이에 2019. 5.

21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E에게 대전지방법원 2019. 5. 22. 접수 제41554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E은 2015. 12. 7.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9,500,000원에 매수하고 2016. 1. 18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E과 피고의 아버지인 G가 F에게 2015. 12. 7. 계약금 50,000,000원을 송금하고 2016. 1. 18. 잔금 89,500,000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.
- E은 2016. 11. 11. H은행에 채권최고액 120,000,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. 11. 14. H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9,927,26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G에게 100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○ 원고는 2017. 8. 17. E에게 6,000,000원을 이자 연 27.9%, 만기 2022. 8. 17.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○ E에 대하여 2019. 3월 기업은행, I카드, J캐피탈에서 채무불이행정보가등재되었고, E은 2019. 5. 28. 원고에게 이자를 입금한 후 원금 5,973,479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 연체 중이다.

○ E은 2019. 5. 21.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0,000,000원에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2019. 5. 22. 접수 제415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○ E은 2019. 9. 20. 이 법원에 2019개회2894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. 11. 27.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20. 4. 20.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가 2021. 3. 10.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다79704 판결)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이와 같이 E과 피고의 아버지인 G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전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E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고, 그 취득 대가를 부담한 G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아들인 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,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신탁자인 G가 수탁자를 E에서 피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

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
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호석

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대전 서구 K, L에 있는 M아파트 N동

[도로명주소] 대전광역시 서구 O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15층 아파트

1층 339.34m²

2 내지 7층 각 328.00m²

8 내지 15층 각 164.00m²

지층 334.86m²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대전 서구 K 대 18136.5m²

2. 대전 서구 L 대 3077.3m²

3. 대전 서구 P 대 28236.3m²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3층 Q호 철근콘크리트조 72.535m²

대지권의 표시

1.2 소유권대지권 21213.8분의 41.18

3. 소유권대지권 28236.3분의 0.41. 끝.

